

### 3. 교육과정 이수의 특례 규정

가. 필수학점을 졸업이수기준학점 이상 초과 취득 시 선택학점으로 인정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필수학점을 졸업이수기준학점 이상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 영역의 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복학·재입학생의 교과목 이수 기준

1) 복학생의 졸업학점 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1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가) 해당 복학생의 입학년도 졸업기준(교과목 이수 기본 원칙이며, 택일하지 않으면 이를 적용)

나) 최종 복학년도에 복학하는 학년의 입학년도 졸업기준

다) 해당 복학생의 실제 졸업학년도를 기준으로 휴·복학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학생에게 적용하는 졸업기준(8학기 이상 등록자가 학점 등록 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8학기 등록시점을 실제 졸업년도로 본다)

2) 재입학생의 졸업학점 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1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가) 해당 재입학생의 입학년도 졸업기준(교과목 이수 기본 원칙이며, 택일하지 않으면 이를 적용)

나) 최종 재입학년도에 복학하는 학년의 입학년도 졸업기준

다) 해당 재입학생의 실제 졸업학년도를 기준으로 휴·복학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학생에게 적용하는 졸업기준(8학기 이상 등록자가 학점 등록 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8학기 등록시점을 실제 졸업년도로 본다)

3) 휴학 또는 제적기간 동안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 영역별 이수기준이 변경된 경우〔교양과목, 기초과목, 전공과목 영역의 기준 변경을 말함〕에는 영역단위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과목별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선택이나 필수의 변경을 말함)에도 과목별로 학생에게 유리한 이수구분을 적용한다.

4) 재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취득

가) 재입학 이전에 기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산 8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